

안심하고 드세요!



닭고기 · 오리고기 · 계란을 먹어서는
절대 AI(조류인플루엔자)에 걸리지 않습니다!

1 AI는 조류가 걸리는 감기로서 감기는 호흡기 질병이며, 소화기(먹는 음식, 식도)를 통해서 전염되지 않습니다. 그러므로, 오리고기 · 닭고기 · 계란을 먹어서는 절대 AI에 걸리지 않습니다.

- ① AI는 사람과 사람사이에 전염되지 않는 조류의 전염병입니다.
- ② H5N1이 고병원성이라는 것은 조류간 전염성이 높다는 것이지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.
- ③ AI 바이러스는 사람간의 전염성이 강한 신형 바이러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. AI가 변이를 일으켰다는 것은 P라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은 새로운 질병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. 따라서 오리고기 · 닭고기 · 계란을 먹어서는 절대 AI에 걸리지 않지만, 소비자 여러분 모두가 더욱 안심하고 드시라는 마음에 20억 원을 배상하는 AI 안전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.

2 AI에 감염된 닭고기 · 오리고기 · 계란은 절대 국내에서 유통될 수 없습니다.

- ① AI에 걸린 닭은 바로 죽고, 죽은 닭은 혈액이 응고되며 털이 뽑히지 않는 등 정상적인 도계가 불가능하므로 절대 유통될 수 없습니다.
- ② AI 바이러스는 자가 번식능력이 없어서 살아있는 닭을 통해서만 증식됩니다. 따라서, 감염되지 않은 닭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도중에 AI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.
- ③ 닭을 도축하는 도계장은 축산물가공업에 의거하여 전문 수의사가 도계전에 생체검사, 내장검사, 혈액검사를 실시합니다. 또한 가공된 닭고기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므로, AI에 감염된 닭고기는 절대로 시중에 유통될 수 없습니다.

3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AI 안전국가입니다.

- 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단 한명의 AI 감염사례도 없는 위생 안전국가입니다. 1999년 이후 전 세계 44개국에서 258명이 감염되고, 153여 명이 사망하였지만 큰 전염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 AI 바이러스 감염자가 질환으로 발전하여 사망한 곳은 닭이나 오리의 사육환경이 사람들의 주거환경과 구분되지 않고, 도계 및 방역시스템이 낙후된 동남아 후진국에서 발생한 사례이며,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, 캐나다, 일본 등 생산시스템이 선진화되고 방역시스템이 구비된 선진국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.

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지침

1. 외국인 근로자 채용전 확인을 철저히 합니다.

- 첫째 : 신분확인 철저 - 성명, 여권번호, 가족사항, 출신국가에서의 직업 등 확인
- 둘째 : 국내 타 농장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확인하여 채용시 방역상 위해가 없는지 확인

2.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합니다.

- 첫째 : 마을회관 등 가족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을 것
- 둘째 : 채용시 성사되면 그 장소에서 소독 등 방역조치 철저
 - 휴대품을 확인하여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·폐기 - 의복·신발·가방 등 개인용구에 대하여 세척·소독 등 조치

3. 농장 근무시에는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합니다.

- 첫째 : 농장청결 등 위생과 소독 등 방역, 질병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준수사항 교육
 - 필요시 가족위생시험소와 수의과학검역원에 위탁 교육
- 둘째 : 농장 출입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의복과 신발 착용
- 셋째 : 농장주변 정리 등 업무수행 후에는 소독 후 축사출입

4. 외국인 근로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.

- 첫째 : 타 농장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방문 금지 - 긴급적 전화를 사용토록 권고
- 둘째 : 휴일 등 외출시에는 귀가 후 주요행적을 파악 기록·관리하고 농장 밖에서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출입
- 셋째 :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·친지 등은 시내 등 외부에서 만나도록 조치

닭·오리 부화장 방역수칙

1. 모든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것

- ① 출입구는 하나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고 잠금 상태 유지
- ②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기록을 일지 형태로 작성·유지
- ③ 의심이 가는 사람과 차량 출입금지 및 방역당국에 신고
- ④ 야생조류 등 접촉방지를 위한 담장, 울타리 상태점검 및 미비시 보완
- ⑤ 출입구, 창문, 하수구, 배수구 등에 방서·방충 시설 설치

2. 철저한 소독으로 전염병원인체 유입을 방지할 것

- ① 차량 및 발판소독조는 바퀴나 장화가 충분히 소독될 수 있도록 운영
- ② 소독약은 유형에 따라 2~3일마다 교환 또는 보충하되 소독조내 오물 수시 제거
- ③ 바퀴뿐만 아니라 차체 내·외부 세척·소독 철저

- ④ 부화장 및 기타 부속시설 출입구마다 발판소독조 설치
- ⑤ 난좌, 발육기, 장갑 등 사용물품 소독
- ⑥ 종사자 외출 및 귀가시 손발 세척

3. 적정 소독효과를 위해 소독약 희석비율을 준수할 것

- ①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의 혼합사용 절대 금지
- ② 부식성이 강한 염기제제는 차량 등 알루미늄 재질 부속품 사용금지 및 눈·피부 접촉 금지
- ③ 포르말린제제는 사람·가축에 직접 사용금지

닭·오리 사료 운반차량 방역수칙

1. 사료 제조업체 및 운반자(대리점, 지역 농축협 등)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

- ① 닭과 오리의 사료는 반드시 구분하여 공급하고, 오리사료 운반 차량의 닭농장 출입을 금지함
- ② 오리사료는 반드시 전량 지대포장 형태로 공급할 것
- ③ 벌크 및 톤백 형태로 운반할 경우에는 시도(축산과)에서 “오리사료 전용운반차량”으로 지정 받아야함
- ④ 돼지사료 벌크운반차량으로 오리사료 운반은 가능하나, “오리사료 전용운반차량”으로 지정받아야 하며, 닭 및 소 사료의 운반은 금지됨
- ⑤ 사료공장·대리점·농장 출입 때마다 소독 실시
- ⑥ 시도 발급 지정서를 차량에 비치하고 “전용차량 스티커”를 조수석 전면유리 하단에 부착한 후 운행

2. 농가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

- ① 사료전용차량지정서 미소지 및 “전용차량 스티커” 미부착 사료운반차량의 농장출입을 차단할 것
- ② 아울러, 지정서 및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시군 등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
- ③ 지정서 소지 및 스티커 부착차량의 농장 출입시 소독을 실시
- ④ 자가 트랙터·경운기 등 사료 운반수단을 마련하여 농장 또는 마을입구에서 축사까지 사료 직접 운반

닭·오리 운반차량 방역수칙

1. 운반업체 및 운반자 준수사항

- ① 시·도(시군) 축산과에 소속, 차량번호, 운전자 성명 등을 신고하고 “오리출하 전용 운반차량”으로 지정 받은 후 운행
- ② 닭 운반자는 시도로부터 지정승인은 불필요하나, 닭 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 부착 후 운행
- ③ 어떠한 경우에도 닭 운반차량의 오리운반과 오리 운반차량의 닭 운반을 금지함
- ④ 차량에서 시·도 발급 전용차량 지정서를 비치하고 전면유리 조수석 하단에 “전용 운반차량” 스티커 부착 후 운행
- ⑤ 농가 도착시 “전용차량 지정서”를 제시하고 출입시 소독 실시

- ⑥ 운반자는 상차 등을 이유로 축사내부에 들어가지 말 것
- ⑦ 도압(계)장 도착시 “전용차량 지정서”를 제시하고 출입시 소독 실시

2. 닭 · 오리 농가 준수사항

- ① 전용차량 지정서와 “오리출하 전용 운반차량” 스티커를 확인(닭 농가는 “닭출하 전용 운반차량” 스티커만 확인)
- ② 지정서(오리) 및 전용운반차량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농장진입을 차단하고 시 · 군 등 방역 당국에 신고
- ③ 운반차량은 반드시 소독실시 후 출입을 허용하되, 운반자의 축사내부 출입을 금지할 것
- ④ 농장 자체 운반시 시도(시군)에 신고 후 차량에 스티커 부착

3. 닭 · 오리 도축장(방역관 또는 자체검사원) 준수사항

- ① 출하차량 도착시 “전용 운반차량” 여부 확인 후 진입 허용
- ② 운반차량 출입시 소독실시여부 지도 · 감독 철저
- ③ 미지정 차량의 오리운반 적발시 시군 등 방역당국에 보고

닭 · 오리 도축장 방역수칙

1. 닭 · 오리 운반차량 관리

- ① 닭 · 오리 전용 운반차량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
- ② 차량번호, 출입시간, 경유농장 등을 기록할 것
- ③ 자체검사원 및 가축방역관은 하차 전 차량소독과 외부에서 1차 임상관찰 실시
- ④ 자체검사원 및 가축방역관은 하차시 개체별로 2차 임상관찰 실시
- ⑤ 하차 즉시 세차장에서 차량을 소독(바닥 · 하체 · 바퀴 등 차량 전체)하되, 수의과학검역원 권장소독약으로 소독 실시

2. 일반 출입차량 관리

- ① 도축장 입구에 설치된 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후 출입 허용
- ② 모든 출입차량 차량번호, 운전자 성명, 출입시간 등 기록 유지

3. 종업원 등 출입자 통제 · 소독

- ① 도축장 입구에서 필요인원만 출입토록 통제 ②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소독 실시(특히, 손 · 신발 소독)

4. 계류장 · 도축시설 주변소독

- ① 작업 전 · 후 계류장, 도축시설 주변 소독 실시 ② 도축시설은 완전히 세척을 한 후 소독 실시
- ③ 도축부산물, 퇴비(액비)는 매일 소독 실시